

# 건설관련 법률상담 사례⑦

## 폼셈의 할증 적용('07. 9)

**Q** | 공사현장의 작업여건이 병원으로 기 사용하는 부분을 증·개축하는 것으로서 열악하므로 폼셈의 할증적용을 받아야 할 것인데, 발주자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?

**A** | 계약서나 그밖에 시방서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볼 때, 질문과 같은 폼셈의 할증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.

시공자로서는 공사작업 공간의 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고, 폼셈의 할증이 적용된 공사기성금의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, 발주자가 그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추후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.

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 발주자와의 사이에 마찰이 예상 되는 바 폼셈의 할증을 인정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할 불이익을 교량하여 향후의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.

## 건산법 개정에 따른 부칙의 의미('07. 10)

**Q** |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 부칙 제6조의 '개정규정에 불

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' 라는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지?

**A** | 질문의 부칙 규정은 하도급 받은 범위 내에서 각 공사별로 기왕에 체결되어 시행하고 있던 시공참여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공사의 종류, 기간 등과 무관하여 장기적·포괄적으로 시공참여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시공참여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.

## 하도급 공사 시행 중 제3채권자의 가압류('07. 11)

**Q** | 원도급자로부터 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원도급자에 대한 제3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?

**A** | 원도급자의 직불동의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도급자에 대한 제3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확보 및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.

원도급자에 대해 그 직영부분에 대한 공사부분 까지도 공사에서 손을 떼고 이를 협력업체에서 시공하는 방법은 법률적인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, 사실상의 조치로서 발주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가능한 것이다.☺

〈자료제공 : 권진웅 대한설비건설협회  
서울특별시회 고문변호사〉